

제14장 농림수산협력

제14.1조 목적

이 장은 특히 다음을 위하여 긴밀한 협력 수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- 가. 이 협정의 동반자 측면의 강화와 상호 관심있는 분야에서의 보다 긴밀한 협력의 진전
- 나. 농림수산 영역에서 무역 및 경제적 관계의 강화와 이해의 증진, 그리고
- 다.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양 당사국 간 기존 농업 및 임업 협력 약정을 강화하는 것
 - 1) 상호 관심있는 분야에서 협력의 증가
 - 2) 농림수산 영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의 촉진
 - 3) 농림수산 영역에서 연구, 과학, 기술 및 교육의 역할을 촉진
 - 4) 상호 경제적 성장 및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을 촉진하고 수립하는데 있어서 민간 영역의 중요한 역할의 장려, 그리고
 - 5) 국제 규범 및 의무의 고수를 촉진하는 것

제14.2조 적용범위

- 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목적과 원칙을 이행하는데 기여하는 모든 형태의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.
- 2. 이 장에 따른 양 당사국 간 협력은 이 협정의 다른 장과 양 당사국 간 기존 협력 약정¹에 따라 양 당사국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련된 모든 협력 활동을 보충할 것이다.

¹ 2007년 4월 26일에 체결된 「대한민국 농림부와 뉴질랜드 농림부 간의 농업협력 약정」 및 1997년 4월 29일에 체결된 「대한민국 산림청과 뉴질랜드 임업부 간의 임업 협력에 관한 약정」

제14.3조 협력 활동

1. 제14.1조의 목적을 추구하면서,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하는 관련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할 것이다.

가. 농림수산 정책 사안에 관한 정책 대화 및 다음의 분야를 포함하는 농림수산 영역에서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고 확장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정보 교환

- 1) 농림수산 영역에서 정부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, 과학, 기술 및 교육
- 2) 예를 들어, 기후 변화 영향, 완화 및 적응, 그리고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농림수산 영역의 역할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, 또는
- 3) 농림수산영역에 관련되는 경제 및 무역 사안

나. 상호 경제적 이익의 분야에서 농림수산 영역의 민간 부문 참여, 그리고

다. 다음과 같은 그 밖의 협력 활동

- 1) 기술 협력
- 2) 공동 연구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
- 3) 전문가, 연구원, 학생 및 관련 전문직 종사자의 교류
- 4) 학회, 세미나 및 워크샵, 또는
- 5) 공동 교육 훈련, 특히 농림수산 분야 교육기관의 학생 및 졸업생을 위한 것

2. 국제포럼에서 일어나는 이니셔티브 및 활동을 고려하면서 협력 활동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고 합의된다. 이러한 목적으로, 양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활동의 세부 내용과 그 이행을 규정하는 이행 약정을 체결한다.

제14.4조 농업

양 당사국은 한국과 뉴질랜드 농업인들 및 기업농들 간의 협력관계 증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양 당사국이 적절하다고 합의하는 농업 사안에 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한다.

- 가. 축산 및 축산 가공업, 작물경작, 원예, 관개농업 및 천연섬유 생산을 포함한 농업
- 나. 농업개혁 및 농업정책
- 다. 농업 경제
- 라. 세대교체 및 농가승계 계획
- 마. 농촌개발
- 바. 환경 및 천연자원 경제와 관리
- 사. 식물, 동물 및 인체 영양의 작물학적 및 유전학적 향상을 포함한 영양
- 아. 지속가능한 보전농경기술, 그리고
- 자.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농업사안

제14.5조 임업

양 당사국은 상호 호혜적 협력과 확고한 무역 관계가 공급의 안정성을 증진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, 임업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 협력분야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- 가. 목재 제품의 무역의 증진
- 나. 임업 영역에서의 투자
- 다. 산림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지속가능한 관리
- 라. 기후 변화가 산림자원에 미치는 영향
- 마. 산불관리 및 통제
- 바. 산림간벌
- 사. 산림해충 통제
- 아. 농가임업

자. 불법 벌채 및 관련 무역의 방지, 그리고

차.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분야

제14.6조 수산업 및 양식업

1. 양 당사국은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의 경제적 및 환경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, 필요한 규제 요건과 합치되도록 서로의 수산 영역에 대한 투자와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수산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. 협력 분야는 예를 들어 다음에 관련된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한 정보교환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해양해충

나. 레저어획

다. 기후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

라. 수산업 경제와 자원 관리

마. 양 당사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책 및 규제적 요건

바. 불법, 비보고 및 비규제 어획, 그리고

사. 양 당사국이 확인하고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수산업 및 양식업 사안

3. 양 당사국은 가능한 수산업 협력 약정을 검토할 것이다.

제14.7조 식량 공급 안보

1. 양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 공급의 유지와 식량 안보 목적의 이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관련 지역 및 국제포럼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, 세계적 식량안보 분야에서 협력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한다.

3. 장기적 식량안보를 달성하는데 있어 무역 및 투자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면서,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농업 및 식량에서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무역 및 투자를 장려한다.

4. 양 당사국에 관련된 주요 식량 및 사료용 곡물의 극심하고 지속적인 공급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적절한 협력 체제(농림수산협력위원회를 포함할 수 있다)를 통하여, 그 상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관련된 요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협의를 실시한다. 양 당사국은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사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으며 양 당사국이 이용가능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5.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수출하는 식량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금지나 제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협력위원회에서 그러한 금지 또는 제한의 효과와 가능한 대안에 관하여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를 실시한다. 수출 금지나 제한이 도입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견의 조기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실시한다.

제14.8조 농림수산협력위원회

1.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농림수산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 위원회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 장의 목적과 이행에 관련된 모든 사안을 검토한다.

가. 양 당사국의 각 정부 기관, 산업, 기관 및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접촉의 지원 및 강화

나. 적절한 경우 이 장의 운영에 관하여 정부 기관, 민간 영역의 대표자, 교육 및 연구 기관과 함께 일하는,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선의 지정

다.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체결된 모든 이행 약정들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이나 분쟁의 해결

라. 추가적인 협력 분야의 모색, 그리고

마.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기능

2.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, 또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. 각 회합의 일자, 장소 및 의제는 접촉선 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결정한다.

제14.9조 재원

1. 이 장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, 그리고 이 장에 구상되어 있는 협력 활동은 적절한 재원이 지원될 때에만 효과적으로 이행가능함을 인정하며, 양 당사국은 자국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자국의 경로를 통하여 그러한 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절한 재원을 제공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회가 적시하는 특정 협력 활동을 위한 재원의 공급을 검토한다.

제14.10조 이견 및 분쟁의 해결

1.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체결된 이행 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견 또는 분쟁을 시의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해결을 모색한다.
2.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에 실패하는 경우, 양 당사국은 그 사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며, 위원회는 이를 이 장 또는 이 장에 따라 체결된 이행 약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대하여 이견 또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배타적 권한을 가진다.
3.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공동 위원회의 지침을 구할 수 있다.